

해외건설 근로자 주택특별공급 활성화를 위한

업무협약서

해외건설협회와 한국주택협회, 대한주택건설협회는 해외건설 근로자에 대한 주택특별공급 활성화를 위해 상호협력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다음과 같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.

제1조 (목적) 본 협약은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해외건설 근로자에 대한 주택특별공급 제도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협력내용) 각 기관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력한다.

1. 특별공급 주택 확보를 위한 정보의 공유
2. 특별공급 제도에 대한 홍보 및 전파
3. 특별공급 제도 관련 법령 및 규정 개선을 위한 자문
4. 기타 각 기관이 특별공급 활성화를 위해 협의하여 정하는 사항

제3조 (비밀유지) 각 기관은 상호 동의 없이 본 협약과 관련한 업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외부에 공개 또는 누설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4조 (운영세칙) ① 본 협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과 기타 협력 사항의 추가 및 세부 추진 방법에 대해서는 본 협약을 근거로 상호 협의하여 시행한다.

② 본 협약서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 기관이 서면으로 제출하여 상호 동의하에 변경할 수 있다.

제5조 (신의성실 의무) 각 기관은 업무협력에 필요한 경우 수시로 만나 협의하고 신뢰와 성실을 바탕으로 협력하여 수행한다.

제6조 (협약의 효력) 본 협약의 효력은 협약서에 서명·날인한 날부터 발생하며 유효기간 종료에 대한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협약의 효력이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.

각 기관은 본 협약의 내용을 성실하게 이행하기 위하여 협약서 3부를 작성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.

2023년 11월 28일



해외건설협회

회장 박선호

박선호



한국주택협회
KOREA HOUSING ASSOCIATION

회장 윤영준

윤영준



대한주택건설협회
KOREA HOUSING BUILDERS ASSOCIATION

회장 정원주

정원주